##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문진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039

발의연월일: 2025. 3. 18.

발 의 자: 문진석·박정현·이건태

윤종군 · 김태년 · 김윤덕

강준현 • 이연희 • 장종태

전용기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, 지적확정측량과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하고 있으며, 현재 지적도면 대부분은 등록(1910~) 당시의 도해(圖解)지역(종이도면)으로 관리되어 지적측량의 정확성・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.

이에 2014년부터 토지분할, 신규등록, 지적복구 등 경계점을 새로 작성하고 지자체 성과검사를 받는 분할측량, 신규등록 측량 등에 한하 여 토지소재, 지번, 경계점위치설명도, 경계점 사진 등 소유자가 쉽게 경계점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·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함.

그러나 지자체 성과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계복원측량, 지적현황

측량 등 지적공부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비이동지 측량은 측량성과 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.

지적측량 중 경계복원측량, 현황측량의 경우 인근 토지와의 경계분 쟁 등 측량 민원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하도록 의무화하여 측량성과의 일관성 확보, 토지 경계점 관리 강화가 필요 함.

이에,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5조제2항의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대상 범위를 비이동지 측량으로 확대하여 지 적측량성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, 작성·관리에 관한 각각의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65조제2항). 법률 제 호

###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.

제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"을 "지적 측량수행자는 제23조제1항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, 제5호에 따라 지상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"으로, "작성·관리"를 "작성하고 지적소관청은 이를 관리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65조(지상경계의 구분 등) ①	제65조(지상경계의 구분 등) ①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
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	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제23조제		
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	1항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		
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	제4호, 제5호에 따라 지상에 경		
<u>록한</u> 지상경계점등록부를 <u>작성</u>	계점표지를 설치한 작성		
<u>• 관리</u> 하여야 한다.	<u>하고 지적소관청은 이를 관리</u> -	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	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	